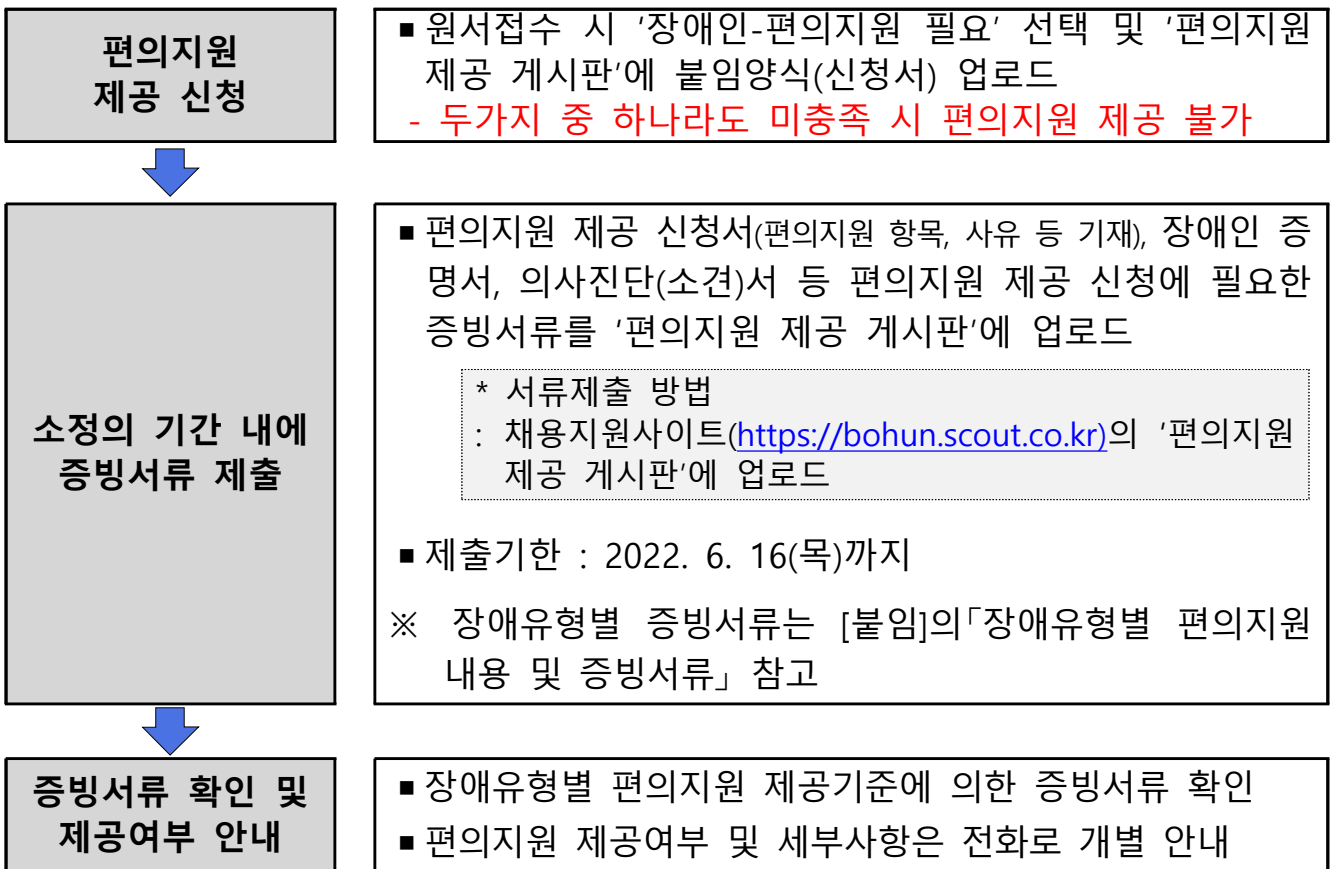


## 【보훈공단 채용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

### □ 편의지원 신청 방법 : 원서접수 시 등록



### □ 편의지원 신청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의사진단(소견)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의사진단(소견)서” 내용이 다른 경우 “의사진단(소견)서”에 근거한 편의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붙임]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채용담당(033-749-3658, 3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축소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 “축소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하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등록증
뇌병변 장애		공통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연장(1.5배) 시험 답안지 대필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시각 장애		공통	장애인등록증 및 의사 진단서 1부
	1~3급,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시험시간 연장(1.5배)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A4규격의 82%(10point)로 축소 인쇄된 문제지) 제공	
	4, 5급 1호,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시험시간 연장(1.5배)	
	5급 2호, 6급 (위 조건 이하의 자)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공통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등록증
기타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1부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1부

\* 보조 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한 보조기기에 한함

\*\* 원서 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 통보함